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의 범위와 대상

The Recipient and Range of Evaluation of Moving-In Resident Registration Notification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실관계

- (1)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 소재 '잔디마을'은 1984. 5.경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거주지를 잃은 도시빈민들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 (2) 원고는 1994. 9.경 잔디마을 8호로 이사한 이래 판자패널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부엌, 방 2개, 세면장 등으로 구성된 10평 정도의 건축물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다.
- (3) 잔디마을에 1987년 전기시설이, 2004. 8.경 수도시설이 가설되었고, 잔디마을 일대는 2007. 6. 11. 장기전세임대주택 예정지로 용도전환이 되었다.
- (4) 원고는 2007. 4. 2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2동장에 세대주 자격으로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양재2동 212 일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사용승낙, 이주대책 요구 등 문제가 있어서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 (5)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수리에 따라 원고와 가족은 학교 입학, 우편송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잔디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인근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 하는 방법으로 교육, 건강보험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대법원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하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3)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4)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부동산 투기,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례 평석

본 판결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인정하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을 통해 심사의 범위 및 대상을 한정한 본 판례의 취지에 동의한다. 판례는 투기, 이주대책 요구 등 방지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확정되었다. ㉮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하였다.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을 지냈으며,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